

제 276회 임시회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문영민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영민
(더불어민주당, 행정자치위원회)

-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
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
11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신
「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「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, 기부식품등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,

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
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